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rch 9, 2026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호주: 필라 2 규정 추가 개정안 및 행정지침 발표

호주 재무부(Treasury)는 필라 2 규정에 대한 추가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외화 환산 규정(foreign currency translation rule)의 도입이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6년 3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은 최근 필라 2 와 관련한 행정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에서 OECD side-by-side 패키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제정이 필요하며,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
- 구성기업으로 분류되는 공동사업(joint operations)의 GloBE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s) 제출에 대한 행정적 접근 방식
- 추가세액(top-up tax)이 배분되는 기업 중 하나 이상이 세무연결그룹(tax consolidated group)의 자회사인 경우, 국내 최저한세(Domestic Minimum Tax) 및 소득포함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에 따른 추가세 배분에 대한 행정적 접근 방식

- 제도 시행 전후 기간과 관련된 일부 이전연도 세액 조정(prior-year tax adjustments)의 필라 2 처리 방식에 대한 지침

벨기에: 2026년 이전가격 세무조사 주요 동향

벨기에 세무당국(Belgian Tax Authorities, BTA)은 2026년 1월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있으며, 벨기에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추가 자료 요청과 그룹 단위 세무조사 확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조사 동향

- BTA의 이전가격 전담부서(Transfer Pricing Cell)는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표준 이전가격 질의서와 함께 사전 미팅(pre-filing meeting)을 요청합니다. 해당 질의서는 납세자의 일상적인 사업 활동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제출된 이전가격 문서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로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 BTA 내부에서 보다 통합적인 조사 접근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전가격,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동시에 검토하는 그룹 단위 세무조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최근 이전가격 조사에서는 개인소득세 관련 사항, 고정사업장, 원천징수세, 실질적 소유자 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 한편, ERP 시스템 내 OTP(operational transfer pricing)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고 있으며, 이는 세무당국의 세부적인 정보 요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RP 기반 데이터 관리 및 내부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사점

최근 벨기에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세무 이슈가 함께 검토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납세자는 세무당국(BTA)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관되게 적용되는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충분한 이전가격 문서화 및 분석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면-2025-국제세원-1970, 2026.02.04.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 질의법인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함
 -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내국법인의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 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 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美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 및 국내기업의 관세환급 전략

1. 美 대법원 판결 요약

지난 2월 20일, 美 대법원은 IEEPA 기반의 관세에 대해 위헌성 6대 3으로 “위법”이라 판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 판결이 내려진 IEEPA 대상 관세와 위법 사유입니다.

1) 위법판결 IEEPA 관세 대상

- 보편관세 (10%, 모든 수입물품)
- 상호관세 (국가별 차등%, 대미 무역흑자 발생국가)
- 펜타닐관세 (캐나다 35%, 멕시코 25%, 중국 10%)

2) 위법사유

-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美 헌법은 세금과 관세를 결정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데,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권한'이 의회의 '입법 및 조세권한'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
- **IEEPA 권한부여 범위:** IEEPA 상 권한은 자산 동결이나 특정 국가와의 거래차단에 국한되며, IEEPA에는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과세권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
- **역사적 관행 부재:** 상시적인 무역 갈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IEEPA의 입법 취지인 '긴급 상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IEEPA 시행 50년동안 IEEPA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음.

2. 무역법 122 조 추가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에 중대하고 심각한 불균형(대규모 적자 등)이 있는 경우 모든 국가 또는 일부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5%의 추가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법령으로, 150일을 초과하여 지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실제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으며, 동 법안은 1970년대 고정환율 붕괴 당시 긴급조치로서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포고령의 주요 내용입니다.

1) 부과 대상

-
-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부과기간동안 미국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10%의 추가 관세 부과

2) 예외 대상

- Annex I, II에 명시된 예외 대상으로서 핵심광물, 통화, 금괴, 금속, 에너지, 의약품, 특정 전자 차량 부품, 항공우주, 정보자료 등
-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대상 물품
- USMCA를 충족하여 무관세로 반입되는 물품
- 기부품, 출판물, 필름, 포스터, 음반, 사진 등의 정보자료, 수화물 중 개인용 물품 등

3) 부과기간

- 향후 150일 (2026.02.24 00:01 EST ~ 2026.07.24 00:01 EDT)

3. 향후 전망

- IEP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헌법적 권한 한계 및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선언하였으므로, 그 법리는 특정 당사자(원고)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 규범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수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 청산완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수입건에 대해서는 **Protest 절차** ▲ 청산 미완료 건에 대해서는 **PSC 절차**를 통해 수입자별로 개별 환급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美 의회는 수입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환급 장애요인 (예: 청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Protest 절차를 통한 환급청구가 불가능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을 해소하고자 ▲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 본 소송에는 주정부도 원고로 참여하고 있어 **법원이 전국적 환급명령**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트럼프는 위법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 할증관세를 포고하였으며, 추후 122조가 허용하는 **최대 15% 범위 내에서** 현재 10% 할증을 15%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임. 또한 122조의 한시 조치를 **무역법 301조를 통한 추가관세 체계로 전환, 확대**하며 동시에 232조와도 병행, 재설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